

2026학년도 제3차 정기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: 2026. 9. 21.(월), 15:00 ~ 15:45

2. 회의장소: 행정관 209호 대회의실 및 온라인 화상회의(구글 미트)

3. 진행방식: 온·오프라인 동시 회의

4. 참석현황

- 참석의원(10인)

• 오프라인(7인): 심 , 이 , 최 , 전 , 이 , 이 , 황

• 온라인(3인): 송 , 공 , 홍

- 불참의원(2인): 복 , 이

- 배 석 자(3인): 이 (대학원장), 김 (대학원 교학팀장), 정 (학생지원팀 과장)

5. 회의안건

가.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 / 대학원 대학원 교학팀

나. 대학 학칙 개정(안) 심의 / 미래인재처 학생지원팀

다.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(2인) 추천(선정) 심의

라. 대학 발전계획 「성신비전 2035」 개선 및 고도화(안) 심의 / 기획처 기획평가팀

마. 기타 토의 사항

6. 회의경과

가. 회의개회

- 1) 의장이 재적인원 12인 중 9인의 참석으로 회의 성원 조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2026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하다.

나. 안전심의

- 1) 의장은 제1호 의안인 “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”를 안전으로 상정하고, 주관부서인 학사운영팀에 설명을 요청하다.
- 2) 대학원장이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“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.
- 3) 의장이 교육대학원 연한 단축의 경우 필요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지 질의하다.
- 4) 대학원장이 교육대학원 교수들이 교육대학원 학생 모집 감소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타 대학(교육대학원)의 현 추세가 5학기에서 4학기 단축 운영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다고 답변하다.
- 5) 의장이 교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지 질의하다.
- 6) 대학원장이 졸업요건이 단축되는 것이 아닌 4학기 동안 압축해서 수학하는 것임을 답변하다.
- 7) 의장이 교육부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질의하다.
- 8) 대학원장이 상충되는 것은 없음을 답변하다.
- 9) 부의장이 수업연한은 통상 몇 학기임을 먼저 규정하고, 고등교육법상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한 경우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대학원 학칙(제10조 제2호) 개정(안)을 보면 기본 몇 학기이고, 특수 조건을 충족하면 단축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, 결론적으로 특수대학원은 모두 4학기 단축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질의하다.
- 10) 의장이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은 처음부터 4학기 교육과정으로 설계할 수 있고,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생이 심사 요건을 충족할 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설명하다.
- 11) 부의장이 교육과정의 정규 수업 기간과 수업연한 간의 내용들이 혼재되

어 있음을 말하다. 현 개정 규정(안)으로는 4학기 교육과정인지 5학기 교육과정 학생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4학기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부연 설명하다.

- 12) 대학원장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대학원의 5학기 교육과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, 예외적으로 (요건이 충족될 경우) 1학기가량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별도로 둬으로써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임을 답변하다. 이어 조문 내용의 어미가 ‘한다’가 아닌 ‘할 수 있다’로 한 부분은 관례에 따른 것이며, 어구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임을 답변하다.
- 13) 의장이 특수대학원에 4학기 과정이 있는지 질의하다.
- 14) 대학원장이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모든 특수대학원은 4학기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하다.
- 15) 부의장이 (대학원 학칙) 규정을 봤을 때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이 정확히 몇 학기인지 잘 알 수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외 예외적인 사항은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을 질의하다.
- 16) 의장이 추후 문구 정비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함을 말하다.
- 17) 의장이 제1호 의안인 “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”에 대하여 다른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다.
- 18) 의장은 제2호 의안인 “대학 학칙 개정(안) 심의”를 안건으로 상정하고, 주관부서인 학생지원팀에 설명을 요청하다.
- 19) 정 : 과장이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“2026학년도 대학 학칙 개정(안) 심의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.
- 20) 황 : 의원이 현재 휴학생, 제적생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 74조가 삭제되고 세부사항으로 따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, 휴학생의 경우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여지가 있는지 질의하다.

- 21) 정 : 과장이 기본적으로 휴학생은 근로 장학 등의 사항 이외에는 지급할 수 없음을 답변하다.
- 22) 의장이 본 안건 내용은 규정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닌, 세부 규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에 따라 학칙을 간소화하는 과정임을 부연 설명하다.
- 23) 황 : 의원이 학생회장직 수행 시 현실적으로 학교생활과 병행이 어려워 휴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하다.
- 24) 정 : 과장이 교학협의회 등의 기회를 통해 논의하는 방안을 답변하다.
- 25) 부의장이 제70조의 각 호를 삭제하고 제70조를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마치 장학금 지급 시 이러한 상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질의하다.
- 26) 의장이 해당 조문이 'AND'(모두 해당)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다.
- 27) 최 : 의원이 각 호에 있었던 내용을 합친 이유를 질의하다.
- 28) 기획평가팀장이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위원들이 각 호로 나열하는 방식이 다소 오래된 형식이며, 세부 내용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 본 조문의 내용들은 간략히 포괄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고, 주관부서에서 이를 반영한 것임을 답변하다.
- 29) 홍 : 의원이 '따로 정한다'는 내용은 어느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질의하다.
- 30) 기획평가팀장이 학칙의 각 내용에 관한 세부 내용들은 각 주관부서에서 규정, 세칙화 하여 담당하고 있으며, 해당 규정들은 규정집, 규정관리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음을 답변하다.
- 31) 홍 : 의원이 대학평의회에서는 세부 규정에 대한 내용은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질의하다.

- 32) 기획평가팀장이 맞다고 답변하다.
- 33) 최○ ○○ 회원이 규정에서는 가급적 ‘할 수 있다’는 표현은 삼가는 것이 합당하여 제70조의 어미가 ‘지급할 수 있다’로 표현되는 것을 ‘지급한다’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다.
- 34) 의장, 기획평가팀장이 문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관부서와 논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하다.
- 35) 최○ ○○ 회원이 (제70조 조문 내용 중) ‘근로’, ‘활동’ 등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, 세부 규정에서 명확히 반영해 주기를 요청하다.
- 36) 의장이 제2호 의안인 “대학 학칙 개정(안) 심의”에 대하여 다른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다.
- 37) 15:27에 이○ ○○ 회원이 참석하다.
- 38) 의장은 제3호 의안인 “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(2인) 추천(선정) 심의”를 안건으로 상정하고, 회의자료에 의거하여 안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.
- 39) 이○ ○○ 회원이 일정이 가능한 교원 중 연장자인 전○ ○○ 회원을 추천하다.
- 40) 의장이 재청하다.
- 41)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평의원의 동의를 받아 추천위원 2인 중 1인을 전용필 의원으로 선정하다.
- 42) 의장이 다음 추천위원 후보로서 직원 주체에서 한 분이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며, 대학평의회회 부의장인 이○ ○○ 부의장을 추천하다.
- 43) 부의장 외부 출장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말하다.
- 44) 의장이 이○ ○○ 회원을 추천하다.
- 45) 홍○ ○○ 회원이 황○ ○○ 의원(학생 주체)의 의견을 확인하다.
- 46) 황○ ○○ 회원이 개인 일정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말하다.

- 55) 황: 의원이 추후 세부 실행과제 계획 시 학생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을 요청하다.
- 56) 기획평가팀장이 교육혁신원과 의논하여 공모전,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을 답변하다.
- 57) 의장이 제4호 의안인 “대학 발전계획 「성신비전 2035」 개선 및 고도화(안) 심의”에 대하여 다른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다.

다. 폐회선언

- 1) 의장은 더 이상 토의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15:45에 폐회를 선언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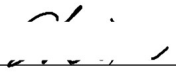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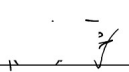
7. 회의록 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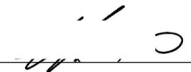
- 이상과 같이 회의 전말의 기록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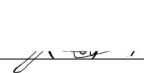
2026. 9. 21.

작 성 : 이 (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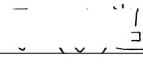
확 인 : 박 (인)

의 장 : 심  부의장 : 이 

의 원 : 이  의 원 : 최 

의 원 : 전  의 원 : 이 

의 원 : 황  의 원 : 송 

의 원 : (인) 의 원 : 공 

의 원 : (인) 의 원 : 홍 